충청북도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(안)
심 사 보 고

1999. 3. 12
기획행정위원회

1. 심사경과

가. 제출자 : 충청북도지사

나. 제출 및 회부일자

○ 제출일자 : 1999년 2월 20일

○ 회부일자 : 1999년 2월 20일

다. 상정일자 : 제158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

○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(1999. 3. 12)상정,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, 심의의결

2. 제안설명 요지

(제안설명자 : 기획조정실장 유의재)

가. 제안이유

○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 및 주요사업 투자심사시 공무원 위주의 닫힌행정을 지양하여 지역주민 참여폭을 대폭 확대함으로써 재정운용의 계획성, 건전성 제고 및 열린도정 실현

○ 중기재정계획 위주의 현행규정에 투자심사 관련 규정을 구체적으로 명문화

나. 주요골자

○ 위원회 구성시

· 공무원수를 총위원회수 1/3 이내로 제한(안 제2조 제3항)

○ 간사의 직위를 격상

· 주무담당 → 주무과장(안 제2조 제4항)

○ 위원회 기능 및 위원회 개최 조항에 "주요사업투자 심사" 규정을 구체적으로 명문화(안 제5조 및 제 6조)

3. 검토보고 요지

(전문위원 : 김 동 응)

충청북도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조례중 개정조례안을 검토한 바

본 조례는 지방재정계획의 수립에 관한 도지사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1992년 5월 29일 충청북도조례 제1988호로 제정된 조례로서

운영상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 지역주민의 참여폭을 확대하는 등 내실있는 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

그 주요내용으로는

지방재정법 제30조의3 제2항의 개정에 따라 당초 위원 18인에서 9인으로 조정됨에 따라 총위원 9명중 공무원 수를 1/3 이내로 제한하고, 직제개편에 따른 관직명칭 변경과 간사의 직위를 주무담당에서 주무과장으로 격상하였으며, 위원회의 기능에 투자심사 관련 사항을 명문화하는 것으로 조례개정이 타당하다고 사료됨.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"생　략"

5. 토 론 요 지 : "생　략"

6. 심 사 결 과 : 원안가결

7. 소수의견 요지 : "없　음"

8. 기타 필요한 사항 : "없　음"

9. 심사보고서 첨부서류

○ 충청북도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(안)
○ 신·구조문대비표